

김정애



제 19 호

민중신문

발행인 김 편집인 : 박 우 섭
발행처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시 중구 삼각동 31-3
합동빌딩 602호 (전화 730-9452)
발행일 : 1985년 12월 30일

제2의 청와대, 일해재단!

재벌돈 끌어모아 성남에 정채불명 연구소(?) 건설중 안보·통일문제논의를 독점하여 정권연장 수단으로

전두환은 88년 임기만료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9월 22일 「아시아 월 스트리트저널」의 특집보도에 따르면, 전두환은 극비리에 자신의 호 '일해'를 따서 「일해재단」을 설립했으며, 현재 그 부속 '안보·통일연구소'를 성남에 대규모로 짓고 있다. 이것은 전두환이 임기만료후에도 민정당 총재직을 고수함과 동시에 일해재단 및 동 연구소를 이용해 계속 국내외정책을 좌우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전두환과 연결된 정채불명의 재단, 제하의 보도내용 요지이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 46,500평의 광대한 대지위에 정채불명의 건물이 완공되어 가고 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 고속도로에서는 숲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입구에는 「안보통일연구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기자가 카카스로 접근해서 공사현장의 한 현 대건설직원을 만났다. 건축주가 누구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일해재단」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토지는 「일해재단」이 작년 10월에 사들였다. 그중 최소한 15,000평은 현대그룹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얻었다.

「일해재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었을까?

「일해재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 안되며,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정부관계자도, 현대건설간부도, 심지어는 「일해재단」 연구원이라는 사람까지도 모른다는 대답 뿐이며 한국 언론은 이를 한번도 보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내외의 소식통들은 「일해재단」이 전두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해는 전두환의 호) 「일해재단」의 공식대표는 육사출신이며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이정호'로 되어 있다.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대로 (730-7908, 732-2180, 삼청동 145-18) 전화를 걸면 "삼청동입니다"하고 받는다. 삼청동은 청와대를 의미한다. 전화로 위치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서 삼청동 일대의 부동산업자에게 위치를 수소문 해 보았으나 아무도 그 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언젠가는 이 정호를 찾아 "퇴근"했다고 하지 않고 "퇴청"

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관청에서만 이 말을 쓴다.

전두환이 일해재단을 비밀 속에 감추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해와 대통령 자신과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임기만료이전에 은퇴계획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권력에 손상이 갈 것이기 때문이며, 또 자금출처에 대해 세인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금출처에 관해서는 어떤 대재벌이 기부했다고도 하고, 여러 기업체의 합동모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독점재벌로부터 이 권과 맞바꾸 거둬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전두환은 왜 자신의 연구소를 세우는가? 그는 대통령임기만료후에도 민정당 총재직을 유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또한 연구소 우두머리로서 외교문제를 좌우할 것이다. [즉 그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연구소를 일본 다나카연구소나 미국의 정책연구소들처럼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만들어, 모든 국내외정책을 거기서 요리하며, 모든 정부기관을 통제할 작정이다. 요컨대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이사만 가겠다는 심산이다.] 그는 특히 중공·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최선의 작

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임기만료후 민간인 신분으로 외교상의 중재특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한다.

「일해재단」설립과 재단토지소유에 세워지고 있는 연구소는 1988년 이후 전두환 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88년에 전두환이 반드시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기만료 후에도 국내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면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화보"를 위한 1단계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임기만료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정권을 손에서 놓지 않기위해 교묘하고 악랄한 흥계를 꾸미고 있음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외면하고 "당은 같아도 사람만 바뀌면 정권교체"라고 그렇게 되뇌이더니...

전두환은 모든 음모를 국민앞에 자백하고 당장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민중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체불·실업문제 해결은 노동자의 힘으로!

악질체불업체 동보전기 노동자, 공단사무실 점거투쟁

조광표 형광등 제조회사인 인천동보전기 소속 근로자 14명이 지난 13일, 인천 한국수출공단 제4단지 관리본부 상무이사실을 점거하여 체불임금 4천3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연행되기까지 「정부는 실업·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민주노조탄압말라」 「노동부장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다.

이 사건으로 노조위원장·노조총무부장은 집시법위반 및 전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되고, 점거농성에 참가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3~5일 구류를 받았다.

동보전기는 1967년 창립하여 사세확장으로 인한 부도로 82년 법정관리 기업으로 바뀌었고 83년부터는 몇 개월씩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체불→파업→임금지불」의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 해온 악질적인 체불업체다.

이에 노조(노동자 180명중 140여명 가입)는 85년 2월 노동자들의 손으로 회사를 운영해 체불임금을 정리하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그러나 운영에서 손을 떼었던 사

업주 성도원(민정당 마포·용산지구 수석부위원장)이 다시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몇 달째 체불이 되었고, 노동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해 법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관계당국의 무성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10월 14일부터 파업농성을 벌였다. 한편, 회사측은 일방적인 휴업공고를 내고 기숙사·식당을 폐쇄하고 한전을 통해서도 전기를 끊고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 내 180여명의 노동자는 굶주림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었다.

이런 사태는 비단 동보전기만이 아니다. 위장폐업을 한 효성물산, 체불임금과 휴업을 남긴 아풍, 프로맥스, 대한마이크로전자, 웨어차일드 등 굴직한 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줄지어 휴·폐업, 체불, 감원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얼어붙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최근 현정권은 실업문제와 관련, 「고용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고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로지역 전업체의 61%가 기본급 5만7천원~8만3천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살인적 저임금을 올리는 커녕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짝소리라도 하면 불황과 실업문제를 몽땅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말이다.

동보전기 점거농성은 일천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체임·실업 등에 대해 더 이상 독재정권에 구걸해서는 안되며 노동자들이 강철같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경복장(코오롱계열) 등 어용 노조위원장 극성

노조위원장이라는 자가 발뚎 나서서 회사측에 빌붙어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가하면 경찰과 짜고서 바쁜 말하는 동료들을 해고시키는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구로공단에 위치한 삼경복장(코오롱 계열)의 노조위원장 김원복이라는 자가 그 주인공인데 그는 7년동안 위원장으로 장기집권하면서 조합비를 착복해서 택시만 타고 다니고 오로지 회사간부, 노동부, 경찰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대변해야 할 노동자들의 권리는 아예 뒷전에 쳐쳐 놓는 짓만 일삼아왔다. 특히 그는 어린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측에 몽땅 바치는 업적(?)까지 올린 바 있고,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일년에 두번인 임금교섭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번으로 줄여버렸다. 그

리고는 뒤가 썩는지 자신의 만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합원을 경찰(이 사람들은 일찌구나 했겠지)과 짜고서 한달을 협박, 미행하더니 기여 3명의 동지를 해고시켜 버렸다.

이런 어용노조위원장이 특히 요즘 판을 치고 다닌다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얼 먹고 그럴까? 김원복이라는 자는 입버릇처럼 "대우어패럴연대 투쟁은 일회용 반창고"라는 등, "지금의 정치세력이 문제가 있어도 정부에 순응해야 한다"는 등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그의 얘기는 결국 "노동자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그저 죽은듯이 살아야 한다. 현정부가 최고다"라는 뜻이고 "대우어패럴은 여기에 대해서 반항했으니 풍지박산나지 않았느냐?"라는 뜻이다.

그러나 김원복씨,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어용노조간부들이여! 당신들처럼 개인적으로 회사·정권에 아무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정당당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더 극심한 감시와 탄압, 저임금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권리를 쟁취할 때에만 이땅에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이룩되고, 정치권력도 노동자를 기만하려는 수작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당신같은 어용배들은 반성하고 즉각 물러나시오.

'85 송년 특별호

민중신문선정 '85 12대 뉴스

미문화원 점거 농성투쟁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소값피해보상요구투쟁
12대 국회의원선거
대우자동차 파업농성
민주열사 분신항거

구로지역 연대파업농성투쟁
개헌투쟁
목동·신정동철거반대투쟁
남북 이산가족상호방문
대대적인 학생운동탄압
용공조직 위한 살인고문

미문화원 점거 농성투쟁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민중학살, 군사독재지원도 마다않는 미국의 실상 폭로

5월 22일 「전국학생운동연합(전학련)」 산하 「광주학살인형 처단 투쟁위원회」 소속 73명의 애국학생들은 '광주학살책임자 처단'과 '광주학살을 방조한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미국문화원을 점거 4일간에 걸친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이 미문화원에서 농성을 감행한 것은 미국이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명백한 항의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이 투쟁을 놓고 '사대주의' 내, '반미' 내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사대주의일 수 없으며,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항의하는 것이 '반미'라면 이러한 '반미'는 정당한 것이지, 문제삼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문제로 삼은 80년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미국은 군대의 광주파견을 승인함으로써 수천 민중의 학살을 방조했으며, 사실상 전두환일파가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자기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온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의 수입개방요구에 대해서 전두환정권은 형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실상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은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이 보장된다면 미국은 언제라도 한국민 수천명이 학살되어도 눈하나 깜짝 않고,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준 사건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허약한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대등한 한미관계에서 자기나라 이익을 확보하는 일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미국이 키운, 말잘듣는 독재정권이 있기에 더 심하게 강요

85년 한해동안 한국 민중은 미국의 '수입 개방압력'이라는 횡포에 어지간히도 시달려야만 했다.

한국산 앨범에 대한 덤핑판정으로 길거리에는 4천원 짜리 '물 건너가지 못한 앨범'이 국민의 '짜귀러 애국심'과 함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것 뿐이 아니다.

9월 7일에는 레이건이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 영화수입 등을 강요해 왔으며 10월 16일에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10월 17일에는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을 극단적으로 규제하는 「철크스법안」이 미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렌지, 아몬드, 화장품, 팜콘, 면도날, 담배, 유리그릇, 초코렛, 화장품비누, 삼푸, 식유난로, 아이스크림믹스, 가축, 동물의 정액까지 수입해 가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한국은 겨우 3년 전부터 미국과의 무역에서 정발 몇 푼 안되는 흑자를 보았을 뿐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감수했던 대미무역적자, 군수물자 구입비, 미국은행의 본국 송금액, 각종 기술이전료 등은 한국의 흑자액수의 수백배에

달한다. 굴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개방압력과 아울러 11월 초 서울에서 열린 IMF·IBRD 총회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외채현황 그리고 군사독재 권력과 미·일 등 해외독점자본간의 관계와 그 실체를 폭로하고 민족자주권·민중생존권 확립은 오직 민중들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별의별 것을 다 수입하려고 요구하는가? 그 대답은 바로 한국에는 미국이 키워 준, 미국 말이라면 뭐든지 다 잘 듣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길이 막혀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농산물수입으로 파산한 농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도 군사독재정권은 미국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미국에 아양을 떠다. 총칼과 미국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일파는 국민이야 어떻게 되는 미국에만 잘 보이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국 군사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횡포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켜내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할 따름이다.

개헌투쟁

민중의 입장에 선 정부수립이 궁극적 목표

85년 한해동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온국민은 박정희 유신독재헌법의 연장에 불과한 전두환 군사독재헌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11월 18일 191명이 감행한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농성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 학내외에서 파쇼헌법철폐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 민중·민주화운동세력은 11월 20일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신민당·민주협은 서명운동전개선언 등 국회 안팎에서 직선제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헌법 고수를 주장하는 민정당과 개헌을 요구하는 신민당 사이에 극

심한 마찰이 생겨 정기국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지금까지 자기의사를 표현할 별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온국민의 합의는 군사독재헌법에 대한 반대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헌법을 고수하는 민정당의 입장은 국민의 기반이 없는 장기독재를 위한 어거지임이 분명하다.

개헌투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퇴진, 군사독재헌법의 철폐를 거쳐 새로운 대통령, 정부를 선출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민중이 원하는 헌법개정이란 민중의 입장에 선 정부를 민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구로지역 연대파업농성투쟁

노동자의 힘이 민중·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되는 디딤돌

6월 24일 구로지역의 5개 사업장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군사독재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규탄하고 구속자 석방, 노동3권보장, 노동부장관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대파업농성투쟁을 벌였다.

이 파업투쟁은 구로지역 민주노조의 구심점이었던 대우어패럴 김준용 노조위원장, 장영자, 추재숙씨 등을 독재정권이 전격 구속한 사건을 발단으로 한 민주노조사수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는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부흥사 등 민주노조 조합원 7백여명도 동참하였다.

84년 6월 대우어패럴 노조설립 이후 구로지역 일대에 민주노조가 결성되면서 기업주와 정권은 이를 끈질기게 탄압해 왔다. 회유, 납치, 구금 뿐 아니라 폭력배들까지 공공연히 고용하여 테러를 가하는 살벌한 상황 아래서도 노동자들은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조를 지키며 20% 안팎의 임금인상을 성취해냈

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교육을 받으며, 다른 사업장의 투쟁에 동참하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하였다.

이런 일체감이야말로 대우어패럴 노조갑부 구속을 민주노조탄압의 신호로 보고 행동을 통일하여 파업·농성을 벌이게 된 기반이었다.

파업농성 6일만인 6월 29일,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폭력배에 의해 끌려나온 이후 대우어패럴 등 4개사업장에서 4백여명 해고되고, 효성물산의 폐업으로 또 4백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40여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같은 현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연대투쟁에서 확인된 힘을 결집하여 서울노동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전노삼민쟁으로 이어 나갔다. 금년은 노동자들의 결집된 힘이 민중·민주화운동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커 나가는 디딤돌이 놓아진 한 해였다.

민중신문선정

“소값피해 보상하라!” 지난 한해동안 전국 농촌을 휩쓴 농민들의 절규였다.

농민들은 4월 23일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농축산물수입 개방요구'를 규탄하고 '현정권의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를 외쳤으며, 이 주장은 곧 외국소와 쇠고기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소값 폭락에 대한 항의로 발전하였다.

경남 고성, 전북 고산과 진안, 부안 등 각지역에서의 '소몰이 싸움'과 9월의 '소싸움보고대회' 등에서 농민들은 소와 경운기를 앞세워 행정기관, 경찰의 탄압을 뚫고 전국의 시장터, 거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농민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해 왔다. 수매가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책정된 일이 있던가? 현재 호당 3백만원이 넘는 부채가 과연 농민들의 잘못 탓일까? 4월 21일 소값 폭락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부 서형석씨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죽어도 뻥? : 것인가?

이 모든 : : : 들의 울분이 소값피해보상 투

85년 한해를 돌이켜 보며 민중·민중들의 생존권보장요구투쟁은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민중권, 민주주의,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해

85....



소값피해보상요구투쟁

농민의 손으로 농민위한정책 생취해야

쟁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전농민의 호응으로 불길같이 타올랐다.

이제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총재: 전경환)를 통해 지난 5년간 20만마리의 소와 2억근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폭리를 취한 현정권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소·쇠고기 도입으로 최소한 3천억 이상의 이익금을 착복한 현정권이, 바로 그 이익을 위해 복합

영농을 내세우며 돈까지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농민들은 잘 알고 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수매가, 소값피해보상 등이 정권에의 호소, 구걸로는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은 농민의 손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을 생취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86년에 들어서는 개헌투쟁과정을 통해 민중의 입장에 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민중의 입장에 선 정부란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8시간노동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정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부, 재벌기업, 부부인들의 이익을

배제하고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부, 자기나라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민중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려는 미국 등의 수입개방압력, 자본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부, 통일문제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고 민족전체의 의사를 모아 진정으로 통일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그리고 민중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이다.

목동·신정동 철거반대투쟁

서울시의 부당이익, 재벌위주정책

반대투쟁

3월 18일 서울시의 형식적인 「세입자대책1개안」 발표, 19일 「강서구 부구청장의 납치(?)」 보도, 20일 현장사무소 방화(?), 동네 학생들의 등교거부 그리고 주민 8명의 구속 등 목동, 신정동 주민들의 대책없는 철거반대 투쟁은 온국민의 관심을 '철거' 문제로 돌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작년 8월 양화교 점거 시위에서부터 3월 20일 오목교 부근에서 학생들과 함께 벌인 시위에 이르기까지, 70여차례에 걸친 시위·농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해 왔다.

소위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서울시는 평당 7~13만원에 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34만원의 건설비용을 들인 후 105~20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1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제시된 대책이란 '이주보조금 50만원', '임대아파트 방1개 분양' 등 크게 선심을 쓰는 척 하는 형식적

인 것이었다.

목동·신정동 주민들의 투쟁은 단지 대책없는 철거에 대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재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당연히 나누어갈 수 있는 주민들과 그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 채려는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 도시민민을 희생시켜 불항에 직면한 독점재벌들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벌위주정책에 대한 항의였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경기부진을 타개하려는 현정권과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주민들과의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9월 이후 지속된 사당3동 주민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내년까지로 예정된 32개 재개발지역, 90년까지의 212개 지역 주민들의 투쟁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로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

독재연장위한 '통일·남북대화 악용' 막아야

9월 20일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휴전선을 넘어 고향을 찾아와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다. 남북적십자회담이 71년 8월에 시작된 이래 15년만의 결실이었다.

작년 북한적십자측의 수재물자 지원에서 비롯된 이 방문은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85년은 이 밖에도 경제, 국회, 체육분야에서의 남북접촉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국민들은 「왜 현정권은 북한의 허담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10년전 박정희가 통일·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연장을 위해 유신독재를 강화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현정권은 조승혁목사, 강만길교수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야기와 다른 통일논의에 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탄압하여 사실상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다.

결국 통일논의, 남북대화에서의 국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현실은 남북대화 통일문제가 또 다시 군사독재정권의 유지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 상호방문 때 매스컴을 동원, 남북의 이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또 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

지금은 국민들이 남북 상호방문을 바라보며 느끼던 남북의 평화적 접근,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대적인 학생운동탄압

학원안정법제정기도로 민주화운동탄압 피해

7월 18일 소위 「삼민주 및 깃발 수사전모」를 통해 이땅의 애국학생들에게 '빨간색칠'을 하여 전면적으로 탄압하려는 현정권의 음모가 진행되었다.

이는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아 학생 노동자, 청년들이 주축이 된 「군사독재정권퇴진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현정권이 우선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국민과 분리시키기 위한 '관제 빨갱이 만들기' 기도였다.

이 '빨갱이 만들기' 공작은 모든 언론매체, 특히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현정권은 여론재판을 통해 삼민주, 깃발, 전학련을 용공으로 매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빨갱이로 몰아치면서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학생운동의 순수

한 이념을 믿는 국민대중속에 그 뿌리를 더욱 넓혀가자 8월에는 현정권은 학원안정법 제정을 기도한다. 학원안정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현정권에 대해 정치적반대를 표시하는 모든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계엄령보다도 더 악랄한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현정권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외에 「학교 또는 학생에 관한 일반법률」인 것처럼 부끄러운 느낌을 주어 86, 88을 치르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사실상 비상계엄 혹은 긴급조치의 또다른 이름이다.

이 학원안정법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된 상태이나 현정권은 언제라도 궁지에 몰리면 이 법안 혹은 같은 성격의 다른 법안이나 조치를 취하려 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민주열사 분신항거

현정권의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성에 항의

85년은 군사독재정권에 항의하여 자기 몸을 불사른 열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해이다.

8월 15일 홍기일열사가 광주 금남로에서 독재정권의 강요에 의해 「침묵」과 「마취」에 허덕이는 국민의 「생각」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꽃다운 청춘을 불살랐다.

9월 17일 경원대생 송광영열사가 「학원안정법 폐지」를 요구하고, 역시 분신자살했다.

또 8월 27일에는 「광주시민군」 출신 이무현씨가 광주 가톨릭센터 앞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이 땅의 젊은 생명이 「군사독재정권 퇴진」 「민중생존권보장」 「민족자주성수

호」 등을 외치며 스스로 불태워지기를 원했다.

민주열사들의 분신항거는 우선 광주에서 2천여 시민을 학살한 현정권이 버섯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또 현정권이 자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안정법제정을 기도하는 등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으며 굶기야는 이 땅의 민중을 외국에 팔아먹는 반민족적 작태를 보이는 데 항의하는 투쟁이다.

이제 내년에는 젊은 생명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사독재정권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하겠다.

또 민청련 전 상임위 부위원장 이을호씨는 물고문, 굶기, 구타 등으로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허인회군도 기습과 국부에 전기고문을 당하였다고 한다.

용공조작 위한 살인고문

의 폐인이 되다시피했다.

김씨에 대한 고문사실 폭로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세력의 고문저지투쟁이 잇달아 펼쳐지고 이 투쟁은 10월 14일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같은 고문은 민주화운동을 용공으로 매도하여 탄압하기 위해 자행되고있다. 현정권은 이러한 살인적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해내고 재판을 거치기도 전에 매스컴을 통해 여론재판을 유도하며, 민주화운동을 국민대중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 하고 있다.

'85 12대 뉴스

운동과 관련된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실현과 함께 온 독자들과 함께 내년도 민중생존권 진할 것을 다짐한다.

12대 국회의원선거

제12대 국회의원을 뽑은 2·12 총선은 85년 한국정치에 커다란 태풍을 몰고 온 민중의 소리없는 외침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항쟁, 노동탄압, 농촌경제파탄, 그리고 갖은 부정부패와 독재를 자행해 온 민정당을 단죄하고 패배시키는 한편, 민정당 단죄에 공동보조를 표명한 신민당을 부추겼다. 신민당의 부상은 민정당의 들러리었던 민한당의 와해를 몰고왔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을 배경으로 득세한 신민당도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노동자의 단결권, 농민의 생존권, 도시민민의 보금자리 철거문제 등과 관련된 민정당에 구걸하는 일 이외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중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결국 민중의 생존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애원하거나 신민당에 기대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중이 주인이 될 때에만 이땅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닫고, 민중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 파업농성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부여

방조하는 어용화된 노동조합. 이것이 바로 한국의 대재벌 대우그룹 산하, 대우자동차의 모습이었다.

84년 9월 부당해고문제로 점화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부당처우개선투쟁, 노조민주화투쟁, 부당해고철폐 요구투쟁, 임금인상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장장 8개월에 걸친 투쟁과정들 통해 기업주와 결탁한 독재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주와 반민중적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하게 만들었다.

70년대와 80년대 초의 노동운동이 소규모 사업장 혹은 여성사업장 위주였던 데 반해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은 국내 유수의 재벌

회사이고, 기간산업인 중공업 분야의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찾아진다. 또 10일만에 걸친 투쟁적 파업농성이 어용적 노조집행부를 제외한 현장 내부의 독자적 조직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결과로 독점재벌의 총수와 당당하게 맞서 18.2%의 임금인상을 쟁취해냄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안겨 주었으며 그 이후 다른 사업장의 임금인상투쟁을 촉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85년은 군사독재정권의 살인적 고문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교차한 한해였다.

특히 9월 26일 부인에 의해 밝혀진 민청련 전의장 김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는 자동차산업.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냈지만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귀포리만한 임금인상.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로없이 저지르고, 이를

86년은 그렇게 안될걸.

김근태 전의장 충격적인 고문폭로

첫공판. 치본에서의 고문, 현정권의 은폐기도 밝혀져

민청련 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었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해 살인고문을 해서라도 민청련에 용공협의를 덮어씌우려 했다. 그러나 고문 사실이 폭로되어 용공조작이 불가능해지자, 대부분 법적 처리가 끝난 민청련간부로서의 활동을 뒤늦게 문제삼

아 이들을 집시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소위 '민청련사건' 이 현정권의 민주화운동탄압 프로그램에 이미 들어있었음을 입증하며,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민주인사에게 어떤 혐의라도 덮어 씌워 구속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 118호 법정에서는 민청련 전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인정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단은 재판공개원칙을 주장하며 방청 제한에 항의했다.

한편 방청제한으로 인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친지·민주단체 인사·민청련회원 등 30여명은 밖에서 「김근태! 재판 받지 말라!」고 외치기도 했으며 곧이어 부인 인제근씨 등 7~8명이 출입문을 밀치고 법정내 들어왔다.

5분간 휴정한 후, 변호인단이 변호사의 김씨 접견을 고의로 방해한 검찰측 태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후 김근태씨의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고문혹적에 대한 확인'과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 신청을 구두로 접수하고 2차공판은 1월9일 오전 10시 118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공고한 후 재판을 마쳤다.

김근태씨 고문폭로 요지

첫째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정의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 둘째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본인의 인간적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셋째 변호인 접견방해 등 고문은폐를 없애기 위해 본인은 고문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고문은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각 5시간정도씩 10여차례 당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해졌다.

본인은 '장의사 사업'의 변장을 기뻐하는 고문담당자에 의해 온몸이 벗겨지고 눈이 가려진다. 그다음 고문대에 눕히면서 밑에 담요를 깔고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5군데를 동여 맨다. 머리와 배,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물을 뿌리고 발에 전원을 연결시킨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

게 강약을 번갈아 전기고문을 당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이 때 방청석에서 울음 터짐. 본인도 울먹임)마음 속으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노래를 되뇌이며 이것을 견뎌내기 위한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꼈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나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고문에 못이겨 9월25일 그들에게 굴복한 후 검사취조과정에서 검찰청 대기실 창밖으로 작업을 하는 10여명의 인부들을 보고 '저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다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위에 말한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기를 바란다.

민청련간부 병합심리

지난 24일 오전10시 최민화부의장, 김희상대변인, 김종복청년부장, 권형택사회부장, 연성수 전 상임위 부위원장 등 민청련 간부 5명에 대한 병합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1월 7일로 연기되었다.

이번 병합심리는 민청련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된 이들이 1명씩 분리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자 본인, 가족, 변호인단이 이에 항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병곤부 의장 징역 2년 선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113호 법정에서 김병곤 부의장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60여명의 일반 형사피의자와 함께 판결이유문도 없이 약 10초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날치기 재판을 함으로써 정

치적 프로그램에 따라 구속된 민청련 간부에 대한 재판을 큰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병곤씨는 지난 22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을호 부위원장 감정유치 2달 연장 고문사실은폐 위한 현정권의 비인간적 작태

이을호씨가 12월 23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감정유치기간이 2개월 연장되자 이에 충격을 받아 더 극심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정권은 민청련 탄압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이을호씨에게 물고문, 굶기, 구타 등을 가하여 정신이상으로 되게 하고서도, 고문사실을 은폐하고 민청련을 용공으로 조작하기 위해 이을호씨를 석방하지 않고 감정유치기간을 연장하는 비인간

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이씨의 주치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정유치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존엄성 조차도 무시하는 군사독재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창립

지난 12일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민주·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구속 또는 수배된 민주인사의 가족들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구성했다.

이날 목요일기도회에서 창립을 선언한 민가협은 그 발족성명서를 통해 구속과 감시, 민중생존권의 탄압 등의 모든 현 상황이 「분단 40년 동안 이 땅위에 독버섯처럼 번져왔던 독재의 아성과 모든 반민주적 억압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나갈 것을 밝히고 「모든 양심주의 석방」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민정당, 노동자 기만하는 노동법개정시안 발표 '개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투쟁에 굴복한것 의미

임금인상투쟁, 노조사수투쟁, 노동법개정투쟁 등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의한 파업·농성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민정당이 노동조합법중 일부조항을 형식적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한다면, 마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정당이 발표한 시안이란 ①노동조합법상의 제 3자개입 금지조항을 개정, 상급노조인 노총과 산별연맹을 제 3자에서 제외 ②단체교섭권의 위임을 신고제로 완화 ③조합비 중 복지비사용 의무 비율 폐지 ④냉각기간 단축 ⑤강제중재는 공익사업에 국한 ⑥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노동특례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법은 1980년,

논설

85년 한 해는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이 체계적인 내용을 갖춰 나가는 시기였다. 많은 싸움의 과정 속에서 민중들은 차츰 「미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신민당을 포함한 현재의 정치세력들이 과연 민중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허담의 남한방문 등 민족통일에 관한 많은 사실이 왜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미국,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미문화원, 미상공회의소에 들어가 미국에 대해 「군사독재정권지원 철회」「수입개방요구 철회」 등을 요구한 대학생들에 대해 현정권은 '폭력', '용공' 운운하며 이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80년 5월 광주에서의 시민화살이 미국의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잘 아는 민중들은, 또 미국의 한국시장침투가 곧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경제의 예측불허로 나타날 것임을 잘 아는 민중들은 학생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함을 느끼고 있다.

「민중들은 답답하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조합결성을 주장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는 독재정권이나 기업주에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 주장에 대해 돌아온 것은 재벌과 결탁된 군사정권의 독재 폭력적 탄압 뿐이었다. 소값파동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의 목소리는 컸고, 싸움은 격렬했지만 어떻게 해야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농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목동·사당동에서 대책없는 철거에 반대하여 극한투쟁을 벌인 도시빈민들도 답답할 뿐이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민중의 입장에 선 민중의 힘 키워야-

2월 총선에서 '민정당은 안된다' 라는 생각에서 민중의 지지를 얻은 신민당은 과연 노동자·농민·도시민민의 '생사가 걸린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국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현정권에 대한 '몇마디 비난을 되풀이하고, 개헌투쟁에서도 민중이 개헌을 바라는 근본이유인 '민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고 민중들은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될대로 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민중의 손으로 민중의 힘을 모으자!」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민중의 손으로 민중의 입장에 서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재벌들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들의 정당한 댓가를 확보하려는 투쟁, 농민들을 독점제별위주정책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고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받으려는 투쟁, 올림픽에 대비한 도시미관을 내세워 사실은 독점재벌을 위해 정기를 부추기려는 '대책없는 철거' 반대투쟁속에서 민중 스스로만이 이 요구들을 성취해 낼 수 있음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주위에 널리 확산시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통일, 남북대화가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된 박정희의 유신 망령이 살아나가는 경계해야 한다. 미국이 수입개방압력을 통해 이땅의 민중들을 더 곤궁하게 만들고 있음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금년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야」 우리에게는 금년 한해 동안 대우자동차, 대우어패럴, 소값파해보상투쟁, 목동·사당동 주민들의 투쟁 등 소중한 경험이 있다. 멀리는 80년 광주의 투쟁이 있고 가까이는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의 투쟁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중이 주인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민중들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민청련·민중신문은 85년의 부족했던 많은 점을 반성하고 민중의 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정당, 노동자 기만하는 노동법개정시안 발표 '개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투쟁에 굴복한것 의미

현정권이 악랄한 수법으로 권력을 장악할 때 노동자를 다시금 말 잘 듣는 재벌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더 나쁘게 고친 악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사실상 제 3자 개입조항과 관련, 이미 지난 3월에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상급노조가 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공익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 비공익사업의 냉각기간, 중재기간의 단축도 아무 의미가 없다.

「민중의 손으로 민중의 힘을 모으자!」을 주장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현행 노동법들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단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에 '법률위반'이라는 울가미를 씌워 탄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민정당은 이번에 형식적인 개정을 통해 이 악법도 한번 고쳐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보려고 사기를 치고있는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노동법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노동자의 생존권보장, 특히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통한 노동자들의 일체감, 주인의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개정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84년 9월 협진양행, (주)유니전 노조설립투쟁이후 85년 말까지 성원제강, 대우자동차, 대우어패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항상 '노동법개



서울고등법원

1993. 7. 6. 판결선고	인
1993. 7. 6. 원본영수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2나1476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김 근 태 (金 槿 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홍성우, 이석태, 조용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백승헌

피고, 항소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희

소송수행자 홍유택, 이송철, 박형길, 최병갑, 박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추봉준, 김병남

변 론 종 결 1993. 6. 8.

원 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30. 선고 86가합5126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1.1.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부분에 판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제3정 제12행의 '갑 제7호증의 29' 다음에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5,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호증의 8, 1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금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6.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건 용 -----

판사 정 장 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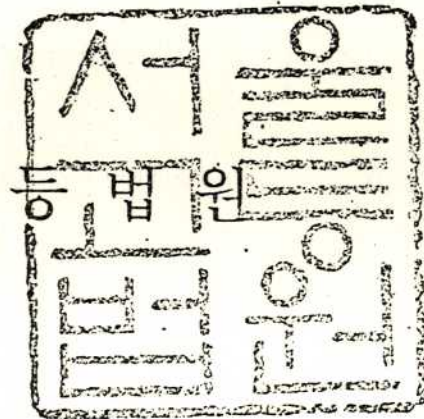
판사 김 종 철 -----

정 본 입니다

199

1942. 7. 09

서울고



법원사무관 승 인



불면기록 2.2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01.30. 판결선고	인
1992.01.30. 원본영수	

제 41 부
판 결

사 건 86 가합 5126 손해배상 (기)

원 고 김 근 태 (金 根 泰)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 고 대한민국 (大 韓 民 國)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기 춘

소송수행자 조현순, 국인철, 이수현, 김현규, 한경인,

신은식, 서영호, 임창수, 이찬규, 박형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성 직

변본종결 1992.1.16. 05339

- 부 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 1. 1. 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1.1. 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관계

감제1호증의 2(제정신청서), 감제2호증의 2(불가소사건 기록부지), 3(사 실과 이유), 5.9(각 고발장), 7(고소장), 8(1차공판 녹취서), 16(자술서), 18, 21, 22, 23, 26, 40, 45, 46, 52, 53, 54, 50 내지 55, (각 피의자신문조서), 59(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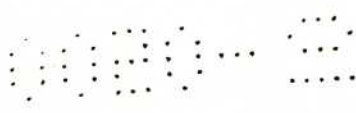
의인지 동행보고), 25(판결실판서), 30(등스장), 31, 85(각 판결문), 55, 60, 65, 72, 86(진술조서), 66, 67, 101, 102, 103(각 진술서), 83, 100, 103(각 경위서), 106(재정신청서), 130, 132(각 조사보고서), 133(증거보전청구서), 135(판결문), 강제3호증의 4 내지 10(각 자술서), 11(피의자신문조서), 29 내지 32, 37, 39(각 공판조서), 34(조사보고서), 38(사실조회촉탁회신), 강제4호증의 5 내지 7(각 공판조서), 강제5호증(착), 강제6호증의 2, 3, 4(각 증인신문조서), 5(진술서), 6, 7(각 결정), 강제7호증의 5, 7(각 결정), 11 내지 21, 23 내지 27, 29, 31(각 공판조서), 28(검증조서), 32(판결)의 각 기재 및 증인 인제근, 송선홍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강제2호증의 90 내지 99, 108, 강제6호증의 3, 강제7호증의 11, 13, 15, 16, 17, 20, 26, 29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송선홍의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선, 1983. 9. 30. 민주노총중앙년연합(이하 민총련이라 한다)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최고이상으로 하고, 민중생활개선에 주력하고, 민중은 행복권을 위한 민중참여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자주국민투쟁임을 지향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대의 상호부조를 실천하 하고 사회대중의 구심점형성을 위한 결집의 노력을 목적으로 내세워 재야항쟁단체인서 박추환 이맹 위 민총련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른 바 민주노총으로부터 박정부유영을 전 개해 오다가 1985. 8. 10. 민총련 제5차총회에서 그 의장직을 사임한 후, 민총련 의장으로서의 위 활동을 관련하여 같은 달 26. 유언비어유죄판결의 판결심판이 청구되어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구류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불법구금

원고선 위 구류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같은 해 9. 4. 05:30경 소 위 김영두 등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문도 드문채 위 유치장에서 따로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위 대공 수사단으로 강제연행된 후 같은 달 25. 까지 그곳 5층 15호 조사실에서 구



국립 상택부 내에서 보낸 박와 같이 관계 경찰관(현)으로부터 그문을 당하권사
 위 민정권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과 밀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위
 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관계 경찰관들은 같은 달
 4. 부딪 6. 까지 원고를 구속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같은 달 7.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위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바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같은 달 25. 에야 이를 제시하였다.

(3) 고 문

원고에 대하여 위 수사를 담당한 위 대응수사단 소속 경감 김수현,
 경정 백남은, 경위 김영두, 경사 최상남, 경장 김현규, 박병선 및 경기도경
 참무 대응본실 실장인 경감 이근안등 관계 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한 위 범죄
 혐의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백을 받아
 내고자 같은 달 4. 위와 같이 원고를 연행해 온 직후부터 같은 달 25. 까지
 '사이애 아려와 같이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위 조사실에서 번갈아가며 원고
 에게 소위 돌고문 및 전기고문등의 방법으로 고문을 감행하였다.

(가) 1985. 9. 4. 07: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5시간 동안 원고가 친

술을 거부한다면 이유로, 위 김수현은 원고에게 "당신 많이 깨져야겠다"고
 하면서 밤을 새워 강제로 부엌을 끓게 하고, 위 박남정은 "것만 먹었다",
 여기서도 진술거부가 행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를 깨부술 것이다"라고 하
 였을 하면서 위 최상남으로 하여금 원고의 옷을 벗기게 하여 "팬츠"만 입은
 상태로 단둥과 밴드로 간을 가린 다음, 각목 4,5개를 사용하여 길이 약
 1.7미터, 폭이 약 1미터 정도로 그릇 세면대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대(이하 고문대라 한다) 위에 앉도록 잡고 원고를 그 위에 눕혀 앉도록 관
 아 몸을 감싼 후, 단둥 허리띠와 같은 줄로 발목, 무릎, 허벅지, 배 및 가
 슴등을 묶고 얼굴위에 두꺼운 수건을 덮어 씌운 다음, 위 최상남 및 정현규
 등이 원고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위 김영두가 주전자
 및 사탕기로 원고의 얼굴 위에 물을 부어서 원고로 하여금 흐뭇한 반응으
 로 반응을 받게 하여 소위 물고문의 방법으로 원고를 고문한 것을 비롯하
 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5시간 동안 원고에게 그
 가 공력주의자이고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자라고 시인하도록 강요하고 민주
 화운동의 핵심인들을 데리고 추궁하면서 위 김영두, 최상남등이 다시 같은

의 그 이후 1977.7.경까지 그의 생활을 하던 동안 후시 북한에 방문하여 그
 두 영혼을 만나고 한층더 포괄적인 의식을 하고 그동안의 원고의 영혼을
 추궁하는 가운데, 위 김영두, 최상남, 이근안등이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번갈아 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을 가하였으므로, 다시 같은 날 19:00경부터
 24:00경까지 5시간 동안 원고에게 민주화운동의 배후를 밝히라고 추궁하면
 서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고문하였다.

(라) 같은 달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3시간 동안 위 김영두, 최상
 남, 박병선등이 원고에게 대학시절의 학생운동관계, 고우관계, 특히 제일동
 포 유학생과의 접촉관계등을 추궁하면서 위 고문대 위에 같은 방법으로 원
 고를 결박한 다음 위 김영두가 금속막대를 원고의 양팔동 위에 등대로 묶고
 전기기구를 접속시켜 위 금속막대에 강한 전류를 일으켜서, 그 진동 및 의하
 여 고통을 가하는 소위 전기봉고문을 가하였다.

(다) 같은 달 13.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4시간 30분동안 위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이근안등이 원고에게 민성연의 재정문제와 배후
 관계등을 추궁하면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13일이다, 외부의 만찬일이니 각

이하"면서 위 물고문 및 전기고문을 가하고, 이어서 같은 달 14. 03:00경 부터 05:30경까지 2시간 30분동안 위 김수현, 박병선등이 원고에게 학생운동의 배후로서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라면서 같은 방법으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하였다.

(바) 같은 달 20. 20:00경부터 22:3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위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정현규, 박병선등이 원고에게 위 문용식, 이을호의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에 대하여 반복진술하도록 하고 이 둘 민청련의 지도이념으로 결정했다고 자백하라면서 같은 방법으로 물고문 및 전기고문을 가하였다.

(사) 같은 달 25. 05:00경 위 김수현이 원고가 위 문용식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부인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수회 구타하는 등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아) 위 관계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고문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신쇠약 및 심한 두통을 일으키게 하였고 위 고문대 위에서의 고통에 겨운 몸부림으로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발짓꿈치 염창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가족 및 변호인의 점견교통의 제한

그후 원고는 같은 달 26. 위 대공수사단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에 따라 그 이후 서울구치소와 수감됨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인 소의 김춘식의 실무에도 적음부터 계속 진술거부의 태도를 보이자 위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과의 점견을 금하고 원고의 진술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원고를 검찰청에 소환함으로써 원고를 가족과의 점견교통이 금지되고 변호인들과의 점견교통 역시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5) 고문증거물의 탈취, 인멸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1. 초순경에 이르러 위 고문으로 인한 발딛꿈치 상처가 아물어 그 상처판지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차후 위 고문의 증거물로 삼고자 유지로 작성 위 구치소내에서 스스로 보관해 오던중 같은 해 12.13.경 변호인과의 점견시 변호인역시 이를 건네주려다가 입회 교도간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였는데, 그후 소의 송산봉, 최덕, 김용근 등 교도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8.00경 원고에 대하여 검방, 감시를 실시한

법정 신문기록부 또는 유전자·화인 위 상치판기행 강제된 수거하여 이를 뒷기함
이런즉 검찰 위 기부의 증거들은 인정되고 밝혔다.

(6) 사건 이부의 정황

원고는 위로서 본 밖의 같이 불만부담 및 고문을 당한 후 1985.9.
26. 검찰로 송치된 위 같은 날 15:00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원고의 처인 소
의 이재근과 변호인인 소의 김상철 변호사를 만나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후로 인한 상치를 보여 주며 그동안 고문당한 사실을
말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보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조사보고를 통하여
1985.12.30.경 위 위원회 관계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위 고문관계 경찰관등
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게 되고 위 인접근 역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등 각계에서 원고의 모욕한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1986.1.6.경 서울지방검찰
청을 위 고문관계 경찰관등을 고소하기위 이르면, 검찰에서는 원고의 위 고
문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점점 집중되던 가운데 위 고소, 고발에
다른 위 고문사실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결과 관계
경찰관등을 대하여 모두 고문등 의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

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리지자, 위 피고인 및 피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
 1987.1.20. 및 같은 해 3.11. 각 재경신영을 함으로써(87 초 25,37) 같
 은 법원에서 위 각 재경신영사건을 영남관리청 법원 1988.12.15. 피신창인
 영 소의 김수연, 김영부, 전상관, 또한 영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법
 법원의 심판에 부속한 재경신영 인양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함소유지판양자
 에 지정된 소의 김창부 변호사의 기소영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대학로 같은
 법원 88고합 1441호 부속부영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어 1991.1.30. 위 피
 고인들 모두에게 원심의 대학로 피고인사실영 대학로 부속판결이 선고되었
 고, 한편, 원고는 위 피고인들 이후 검찰수사를 거쳐 1985.10.26. 같은 법
 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행유무 기소되어 1986.3.6. 제1심에서 징역 7년에 자
 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3. 제2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을 선고받은 다음 같은 해 9.23. 상고심에서 원고(피고인)의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의무

(1) 형사 피의자트 조사를 받게 된 원고의 대학로 관계 경찰관들이 즉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고문종거(상처판지)의 발위, 인멸의 권요시 위
 상처판지가 원고의 이 사건 고문피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판결문서 형
 형법 제62조, 제41조 소정의 구치소 재소자의 구치소 영치규정다 등 시행
 령 제135조 소정의 재소자의 구치소 영치규정의 의하여 조판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영치시켜야 할 것임에도 관계 고문관들이 이를 강제로 수거하여
 임의로 폐기한 이상 이는 형법 및 동시행령의 위 각 규정의 반하는 행위
 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위
 관계 경찰관 또는 고문관들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문무원의 상황에
 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음의 피압감을 고통을 받고 그 영혼과 인격에 지
 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어 앞으로 그 상흔의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공무원들의 위 각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으로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앞에서 본 각항 및 변호인등의 명칭고문제한의 점에 대하여

의 검사비 등 부속사건비용의 부담액이 5,000,000원의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의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 변호인 안인자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
 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
 이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인 안인자 등의 의견에 의하면 피의
 자가 트럭을 운전 중 인명피해를 입힌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
하여 보건대, 이상에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전말, 원
고의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및 원
고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하여야 할 위자료는 이 사건 고문행위에 대하여 금 35,000,000원, 불법구금
행위 및 고문증거의 탈취, 인멸행위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씩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합계 금 45,000,000
원(3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6.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각 상하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30.

재판장 판 사 고 현 철 -----

판 사 김 봉 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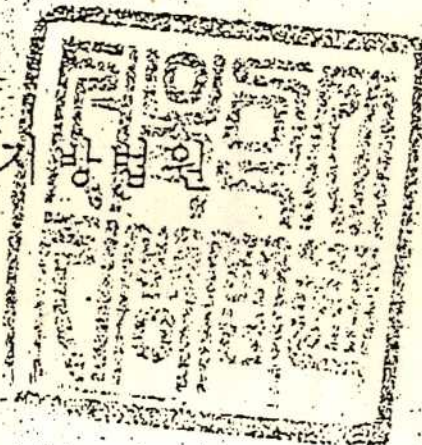
판 사 문 영 학 -----



정본입니다.

1991. 2. 11

서울민사지



법원

법원사무관

직

증



민소 151 ②

2-137

주: 이 정본은 법원의 인을 받은 것